

인천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단2522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윤소슬

피 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태종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14. 접수 제2157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 주식회사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7. 3. 10.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9. 6. 14.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 C의 어머니인 D은 2017. 6. 1. 원고에게 액면금 2억 1,000만 원, 지급기일 2019. 6. 29.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C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피고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D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 피고 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D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회사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피고 C가 아닌 D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한 것이라 볼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그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